

(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참조14)

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18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6. .

제 출 자 : 성남 시장

개정 구분 : 일부개정

개정 이유

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관련 상위법령 제정 및 해당 위원회명
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주요 내용

- 가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제72조를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로 변경(안 제1조)
- 나. ‘향토유적보호위원회’를 ‘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’로 변경(안 제7조)
- 다.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를 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(안 제10조)

개정 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4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상황 : 해당없음

성별영향평가결과 : 불임(원안동의)

부패영향평가결과 : 불임(원안동의)

규제심사검토결과 : 불임(원안동의)

입법예고결과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3. 4. 10.(월) ~ 5. 1.(월) (21일간)
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제72조”를 “「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향토유적보호위원회”를 “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”를 “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화예술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문화예술과장	권순창
	종무팀장	한정선
	주 무 관 (연 락 처)	정은란 (729-347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제72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</p> <p>제10조(준용)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와 「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-----.</p> <p>제10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----- -----.</p>

[관계법령 발췌서]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66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

[시행 2016. 6. 20.] [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92호, 2016. 6. 20., 일부개정]

제4조(설치) 문화재의 지정·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[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]

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



성 남 시



수신 문화예술과장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3A경기성남029)

1. 문화예술과-6120(2023.4.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,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여성가족과장 *김경아*

주무관	이승민	주무관	소진수	여성가족과장	2023. 4. 4. 김경아
협조자					
시행	여성가족과-6956	(2023. 4. 4.)	접수	문화예술과-6178	(2023. 4. 4.)
우	13437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, (여수동)			/ http://www.seongnam.go.kr/
전화번호	031-729-2925	팩스번호	729-2919	/ mainya@korea.kr	/ 대국민 공개

성남시 승격 50주년 "우리가 원하는 미래, 성남이 만듭니다"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치법규명	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
평가담당	감 사 관	지방행정주사보	조 혜 미
입안주무부서	문화예술과	통보(조치)일	2023. 5. 2.
관련조문	검토결과	조치사항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원안동의 		

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

관 리 번 호	2023-30 경기성남		
조례규칙명	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
소 관 부 서	기 관 명	경기도 성남시	
	부 서 명	문화예술과(종무팀)	
	담당자명	정은란	전화번호 729-3479
규제심사요청서 제출날짜	2023년 4월 3일		
검 토 내 용	<p>○ 개정조례: 「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</p> <p>○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.</p>		
종합 검토 의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○ 신설 · 강화되는 내용이 없는바, 원안 동의함.</p> <p>○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.</p>		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3년 4월 3일

법 무 과 장

(담당자/연락번호 : 유리나/031-729-8843)

문화예술과장 귀하